

## 중화민국 대만 신베이 지방법원 민사판결확정증명서

중화민국 대만 신베이 지방법원은 원고 양정림과 피고 이지나 사이의 113년도 혼자 제526호 이혼 등 사건(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포함함)에 관하여, 중화민국 114년 (2025년) 4월 9일 선고한 제1심 판결이 중화민국 115년 (2026년) 4월 10일 확정되었음을 이에 증명한다.

중 화 민 국 115 년 (2026년) 4 월 15 일

「호적법」 제48조에 따르면, 호적등록의 신청은 사건 발생 또는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출생등록은 늦어도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기한 내에 법에 따라 호적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.

호적법 제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: (호적등록사항) 호적등록은 다음 각 호의 등록을 말한다. 1. 신분등록:

(1) 출생등록 (2) 인지등록 (3) 입양·입양중단등록 (4) 혼인·이혼등록 (5) 후견등록 (6) 보조등록 (7) 미성년 자녀에 대한 권리·의무의 행사 또는 부담 등록 (8) 사망·사망선고 등록

중화민국 대만 신베이 지방법원 가사법정

I hereby declare that the version is in conformity with the original document.  
本人聲明上述韓文譯本與中文原文相符

Translator譯者 :